2020년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I. 회의 개요

o 일 자: 2020. 5. 15.(금요일)

o 방 법: 온라인심의

o 참 석 자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

- 심의위원: 김경숙 위원(분과위원장), 박정인 위원, 최승수 위원, 최현용 위원

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〈**의결안건**〉 ※ 안건 검토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

·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Ⅱ. 회의내용 및 결과

- o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4건(안건번호 제2020-25431호~25490호)
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 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

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본 사건은 웹하드 사이트(>無無無, ◎◎◎◎ 등)에 불법복제한 음 악저작물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 송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
- B 위원: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 가결의견임. 다만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지된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할 것임.
- C 위원: 본 심의대상 안건 복제물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10개의 상업용 웹하드형 온라인서비스에 게시된 74건의 최신 음악 복제물들 로서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함. 그러나 이들 음악들은 모두 최신 인기곡들로서 복제 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영리 목적의 온라인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저작 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짐.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저작권법 제133조의3의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 권고가 필요함. 다만,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 고만이 타당함.
- D 위원: 안건번호 제2020-25431호~25490호(74건)는 불법 복제한 음악 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 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

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0년 제7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0. 5. 15.

분과위원장 김경숙

위원 박정인

위원 최승수

위원 최현용